

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
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3개월 이상 지정사업 미운영
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 하고,
어린이·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·채소 등을 간식형태로
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
식습관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